# 20210407 재보궐선거 홍보매뉴얼

더불어민주당

# 20210407 재보궐선거 홍보매뉴얼

이 책자는 2021년 4월 7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홍보매뉴얼입니다

더불어민주당의 로고 규정에 따라 선거홍보에 있어 일관성 있는 이미지로 유권자들에게 인상적이고 친숙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제작물 지침을 정리했습니다.

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활용한 홍보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일관성 있는 홍보를 위해 매뉴얼 지침과 표준에 따라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매체대응을 해주시길 권장합니다.

이 매뉴얼은 더불어민주당 고유의 재산이자 선거 홍보매뉴얼로써 선거에 필요한 경우에만 복제와 열람을 허용합니다.

문의: 더불어민주당 미래소통국

T. 02.2630.0082 F. 02.2630.7050



# 더불어민주당 **로고 및 선거 슬로건**

시그니처 기본형 / 심벌 · 로고 / 슬로건 의미



당심볼(응용)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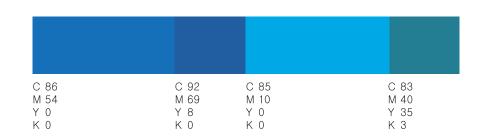
가로형 (응용)

#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

2줄형 (응용)



C 77	C 98	C 90	C 100
M 10	M 83	M 80	M 87
Y 35	Y 37	Y 0	Y 0
K 0	K 2	K 0	K 0



슬로건 흰배경 (응용)

1.

# 우리함께 이겨냅시다

THULLY SIELLE SI

- •국민의 일상 회복, 대한민국 도약과 혁신을 완수할 집권여당 후보 강조
- ·코로나 방역 성공과 일상 회복으로 4.7 재보선 승리와 2022년 대선 승리의 디딤돌

슬로건 파란배경 (응용)

우리함께이겨냅시다 计计型子 히보기도약



# 홍보 **인쇄물**

명함 / 선거벽보 / 책자형 선거공보 / 점자형 선거공보

# **후보자 명함** – 규정

내용

- 후보자의 사진, 성명, 기호, 소속 정당명
-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명, 전화번호
-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

규격

• 길이 9cm, 너비 5cm 이내

**배부시기** • 2021. 3. 25~4. 6(선거운동기간중)

배부

- 후보자. 후보자의 배우자(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) 와 직계존비속
-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.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활동보조인, 후보자가 지정한 1명
- \*활동보조인: 장애인 후보자 자신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

**관련법규** •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. 제93조 1항 1호

# **후보자 명함** — 예시 A안

### 후보자 명함 A안 앞면



### 뒷면



### 후보자 명함 B안 앞면



### 뒷면



# 후보자 명함 - 예시 B안

### 후보자 명함 C안 앞면



### 뒷면



### 후보자 명함 D안 앞면



### 뒷면



### **선거벽보** – 규정

내용

• 후보자의 성명 · 사진 · 기호 · 경력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 · 정책

•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

규격

• 길이 53cm, 너비 38cm

용지

• 100g/m²이내, 종이 1종

**제출시기** • 2021. 3. 24(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)

제출처

• 지역 관할 구 · 시 · 군선거관리위원회

- 유의사항 후보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대로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해야함 (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가산 할 수 있음)
  -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경우 게첩불가
  -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. 다만.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 · 기호 · 소속 정당명과 경력 · 학력 · 학위 · 상벌(이하 "경력등"이라 한다)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

- **관련법규** 공직선거법 제64조
  -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 제121조

# 선거벽보 - 예시 A안

선거벽보 A안



선거벽보 B안



# 선거벽보 - 예시 B안

### 선거벽보 C안



### 선거벽보 D안



# **선거공보** – 규정

**내용** • 앞면 : 명칭(책자형 선거공보). 선거명, 선거구명

• 둘째면: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 게재

**규격** • 길이 27cm, 너비 19cm 이내

• 면수: 지방자치단체장(12면 이내), 지방의회의원(8면 이내)

**제출시기** • 2021. 3. 26(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)

**제출처** • 지역 관할 구 · 시 · 군선거관리위원회

**유의사항** • 책자형 선거공보(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외)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접수불가

•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(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)에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게재하거나,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, 선거공보의 규격 · 제출기한을 위반한 경우 접수 불가

**관련법규** • 공직선거법 제 65조

• 공직선거거관리규칙 제30조

# 선거공보 - 표지면 예시 A안

선거공보 A안 선거공보 B안



# 선거공보 - 표지면 예시 B안

선거벽보 C안 선거벽보 D안



# 선거공보 - 내지면 예시













# **점자형 선거공보** – 규정

내용

• 앞면: 선거명 · 선거구명, 후보자성명을 한글 및 점자와 함께 게재

•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과 반드시 동일해야함

• 길이 27cm, 너비 19cm 규격

• 면수: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면수 이내

• 2021. 3. 26(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) 제출시기

•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· 제출하여야 하되, 책자형 선거공보에 유의사항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

**관련법규** • 공직선거법 제65조

•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

### **선거공약서** – 규정

### 내용

-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(각 사업목표 · 우선순위 · 이행절차 · 이행기한 · 재원조달방안)을 게재한 1종
- 후보자의 성명 · 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 · 학력 · 경력,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후보자별 제한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음
- 앞면: "선거공약서" 라고 표시, 선거명, 후보자성명,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(무소속후보자는 "무소속"이라 표시한다) 을 하글로 게재하여야 함
- 뒷면: "이 선거공약서는 「공직선거법」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."라고 표시, 인쇄소의 명칭 · 주소 · 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

### 규격

- 길이 27cm, 너비 19cm
- 면수: 시·도지사선거 (16면 이내).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(12면 이내)

### 배부

• 후보자와 그 가족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

### 제출시기 및 제출처

- 제출시기 및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 · 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신고
  -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 · 시 · 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 제출

### 유의사항

-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
- 우편발송(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) · 호별방문이나 살포(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)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음

### 관련법규

- 공직선거법 제66조
-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1조



# 주요 **선거홍보물**

간판 · 현판 / 현수막 / 어깨띠 / 소품 / 유세치량

# **간판 / 현판** – 규정

내용

• 후보자의 성명, 기호, 소속정당명 및 선거시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명, 전화번호

•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

규격

• 제한없음

유의사항

• 선거사무소,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및 게시 불가

•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· 게시할 수 없음

**관련법규** • 공직선거법 제61조 6항

•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 3항, 4항

# **간판 / 현판** — 예시

### 간판 A안



### 간판 B안



현판 A안

현판 B안

# **외벽 현수막** – 규정

**내용** • 후보자의 성명 · 사진 · 기호, 소속정당명 및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명, 전화번호

•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

**규격** • 제한없음

**유의사항** • 선거사무소,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및 게시 불가

•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• 게시할 수 없음

**관련법규** • 공직선거법 제61조 6항

•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 3항, 4항

# **외벽 현수막** - 예시

### 외벽 현수막 A안



### 외벽 현수막 B안



### **거리 현수막** – 규정

내용

• 후보자의 성명 · 사진 · 기호, 소속정당명 등

•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

규격

• 10m² 이내, 천으로 제작

게시방법

• 현수막 게첩시 관할 구 · 시 · 군위원회가 교부한 표지 첩부 · 게시

• 현수막 교체 시 종전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첩부해야함

•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 · 시설에 고정하여 게첩해야함

유의사항

• 애드벌룬 · 네온사인 · 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사용불가

•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식의 게첩불가

•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식의 게첩불가

•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첩하는 방식의 게첩불가

관련법규

• 공직선거법 제67조

•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

### 현수막 A안



### 현수막 B안



\* 적용폰트: sandol 격동고딕 / 윤고딕 320, 360

# **어깨띠 및 소품** – 규정

• 후보자의 사진 · 성명 · 기호 및 소속 정당명

•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

규격 • 어깨띠 : 길이 240cm, 너비 20cm 이내

• 마스코트, 표찰 · 수기 그 밖의 소품 :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

◆ 후보자와 그 배우자(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)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

• 선거사무원,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, 회계책임자

**사용기한** • 2021. 3. 25~4. 6(선거운동기간중)

**관련법규** • 공직선거법 제68조

•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

# 어깨띠 - 예시







어깨띠 D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합

# 소품 - 예시 A안





막대풍선





에어핑거



EYE 쿨패치

〈제작문의〉 - 헬로우미디어 (아이 쿨패치) Tel) 043-296-2218



색안경

# **소품** - 예시B안



LED 조명스틱

〈제작문의〉

- 스타엔트리 (LED 조명스틱) Tel) 070-8955-7495



캐릭터형 캐리커처 및 프링팅 와팬





〈제작문의〉 - 센트롤 (뱃지형 프린팅 와팬) Tel) 010-5015-1348

# **1828**



돌돌이 배너(손피켓)

〈제작문의〉

- 돌돌이 (돌돌이 배너 손피켓) Tel) 1588-2445

# **유니폼 : 티셔츠, 모자** – 규정

내용

• 후보자의 성명, 기호, 소속정당명, 간단한 구호 등

착용주체

• 후보자와 그 배우자(직계존 · 비속 중 신고한 1인)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

•선거사무원,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, 회계책임자

**제작비용** •윗옷: 3만원이내(인쇄비: 6천원이내)

•모자 : 7천원 이내(인쇄비 : 2천원 이내)

**사용기간** • 2021. 3. 25~4.6(선거운동기간중)

**관련법규** •공직선거법 제68조

•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

# **유니폼: 티셔츠, 모자** – 예시









점퍼



### **유세차량 및 확성장치** – 규정

### 내용

-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· 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음
-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 · 대담 시 후보자와 선거연락소 (시 · 도지사선거 선거연락소에 한정) 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 방송기능.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표지부착 필수

### 기간

• 2021. 3. 25~4. 6(선거운동기간중)

# 자동차와 확성장치 수량

• 시 · 도지사선거 : 후보자와 구 · 시 · 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 · 각 1조

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· 시 · 군의 장선거 : 후보자마다 1대 · 1조

### 녹화기 화면 규격

• 시 · 도지사선거 후보자용 : 10m² 이내

• 시 · 도지사선거 구 · 시 · 군선거 연락소용 : 5m² 이내

• 자치구 · 시 · 군 장선거 후보자용 : 5㎡ 이내 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용 : 3㎡ 이내

### 공개장소

• 연설 · 대담 : 오전 7시 부터  $\sim$  오후 10시 까지

### 연설 - 대담시간

-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한 연설  $\cdot$  대담 : 오전 7시 부터  $\sim$  오후 9시 까지
-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: 오전 6시 부터  $\sim$  오후 11시 까지

#### 유의사항

-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음
-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· 대담장소 또는 대담 · 토론회장에서 연설 · 대담 ·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
- 연설 · 대담과 대담 · 토론회 (방송시설 이용 경우 제외)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는 개최불가

### 관련법규

- 공직선거법 제79조, 제91조, 제102조, 제216조 1항
-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

# **유세차량** - 차량 예시

